

화순군수리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1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. 13
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1. 21

(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건설과장 김용현

나. 제안사유

○ 본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리계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·관리하여 왔으나

○ 2002. 12. 26, 2003. 1. 16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,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조항이 각각 삭제되고,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안 제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농어촌정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조문을 변경하는 조례로서 내용상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결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붙임 : 화순군수리계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수리계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수리계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지관리기금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